

제재내용 공시

1. 조합명 : 거제수협

2. 제재조치(요구)일 : 2026. 01. 30.

3. 제재조치(요구)내용

제재대상	제재내용
직원	변상(8명), 견책(2명)

※ 향후 관련 내규 등에 따른 이의신청(재심) 처리결과에 따라 제재조치 내용이 변동될 수도 있음

4. 제재대상 사실

- 금융어업자금대출(신용) 대손판정 불인정으로 손실 발생
- 금융어업자금대출 기한연장 및 대환 취급 후 해당 대출이 연체되어 대손보전을 신청하였으나, 차주의 어업활동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대손판정 불인정됨으로써 조합 손실을 초래하였음

< 관련법규 >

- 「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규정」 제11조(대손보전 대상)
- 「정책여신 업무방법」 제96조(정의), 제117조(기간연장 및 재약정)
- 「상호금융 여신업무방법」 제1편 제87조(채무자 자격제한), 제226조(대손보전대상대출금)